

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

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와 급속한 노령화 시대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 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
[퇴직금 수급권보호]

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내유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.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하므로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이 보장됩니다.

[변화하는 노동환경]

짧은 이직과 중간정산,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생활 자금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소진된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(개인형IRP)를 통해 퇴직금을 통산하여 노후생활 자금으로 적립 할 수 있습니다.

[노후생활 자금마련]

고령화 ·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,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.

〈 노사 모두를 위한 경남은행 퇴직연금 〉

 <p>〈회사(사용자)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 · 정기적(매월, 매분기, 매반기, 매년)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비용부담이 평준화 되고,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. · DC의 경우 부담금 납입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,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.
 <p>〈근로자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. (회사의 폐업, 도산 시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퇴직금 청구 가능) · 이직/퇴직시의 퇴직금을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(IRP)를 통해 계속 적립하여 은퇴자금 형성이 가능합니다. 추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다양한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.

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

■ 확정급여형(DB)제도

퇴직연금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기준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

- 퇴직급여 = 퇴직시 기준임금 × 근속기간
- 기준임금은 30일치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
- 적립금 운용주체 : 사용자

▷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한 후 적립부족에 해당할 경우 가입자에게 안내 드립니다.

■ 확정기여형(DC)/기업형IRP제도

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납입주기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/12이상을 가입자 계정에 지급하고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

- 퇴직급여 = 기업부담금 납입원금 + 운용손익
- 기업부담금 : 가입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
- 적립금 운용주체 : 가입자

▷ 부담금 납입지연 시 가입자에게 안내 드립니다.

부담금 납입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기업부담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E-mail, SMS, 우편으로 직접 안내 드립니다.

▷ 부담금 지연납입 시 지연이자 발생합니다.

확정기여형(DC)/기업형IRP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(연 10~20%)가 발생하며 이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

* 지연이자 제외사유 : 사업장의 회생절차개시, 파산선고,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

■ 개인형퇴직연금(IRP)제도

퇴직급여제도(퇴직금제도/퇴직연금제도)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퇴직급여 또는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